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제출년월일 : 2015년 4월 29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등 상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 개선

- 서울시 조례 준칙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 (안 제2조제3호)

다.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 신설(안 제5조)
- 상위 법령에 맞게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 정비
  (별지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라.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년 동안 단계적 인상(제9조 관련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2015.3.25. ~ 4.14.)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1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36조제3호"를 **"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로,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를 **"따라 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하려는"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개정 규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개정 2015. . .)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 법 제36조)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00
	다.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 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3> (신설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제9조 관련)

(단위: ℓ, kg, 원)

구분	용량	인상안	
		1단계(2015년)	2단계(2017년)
단독주택	1ℓ	70	100
	2ℓ	140	200
	3ℓ	210	300
	5ℓ	350	500
	10ℓ	700	1,000
	20ℓ	1,400	2,000
	30ℓ	2,100	3,000
	120ℓ	8,400	12,000
	1kg	**100**	**130**
공동주택	1ℓ	70	100
	120ℓ	8,400	12,000
	1kg	**100**	**130**
음식점	1ℓ	100	140
	1kg	**130**	**190**

※ 1) 2015년 :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

2) 2017년 :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다량배출사업장 : 별도계약으로 정함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 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수수료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설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일	배출량 kg/월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⑨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 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별지 제2호서식 > (신설 2015. .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별지 제2호의2서식 > (신설 2015. .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⑤ 공동 수집·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 수집·운반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 . .)

(앞 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 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5. . .)

(앞쪽)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참여 의향서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m^2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2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2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kg/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계획			kg/월

처 리 계 획	자 가 처 리					
	재활용량		처리방법			
	위 탁 처 리					
	재활용량		업체명		처리방법	

※ 참여업체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방침을 세우고 이행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협약에 참여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협약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

대 표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매일 막대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Ⅰ. 음식업소(집단급식업소) 및 대규모 점포 등 협약사항

1 음식물의 생산·유통·조리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법을 적극 실천한다.

- 집단급식소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을 실천한다.
- 식품접객업 영업 및 관광숙박업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을 실천한다.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을 실천한다.

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협약사항(음식업소)

- 협약이행 다짐대회, 서약운동 등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협약업소에 대한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 각종 회식, 모임 및 행사시 협약체결 음식점 우선 이용토록 홍보한다.

Ⅰ. 서대문구청 협약사항

-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년 월 일

업 체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대 표_____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장 서대문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이행 서약서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과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업 체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 7. (생 략)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생 략)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 ④ ----------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1항제3호** --------- 3. ----------

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따라 수수료** ----------.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시행 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 단위당 처리비용에 따라 정하고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 ----------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과 음식물 줄이기 및 억제를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 주민에게 한 가구당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한 개를 한 차례만 무상 지급 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시행령** ---------- **폐기물처리 신고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3.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 신고자** ----------. 2.·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 1호의 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여야 한다.	**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 사본(**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재활용자에 대한 처리기준 준수 및 적정 재활용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경우 의향자의 의지와 이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협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협약의 적극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 ---------- ---------- --------- **별지 제7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0**	**70**	**10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50**	**7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 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 법제36조)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나.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100**	**100**
	다.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처리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 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마.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300**	**600**	**1,00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신 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제9조 관련)

(단위: ℓ , kg, 원)

구분	용량	인상안	
		1단계(2015년)	2단계(2017년)
단독주택	1 ℓ	70	100
	2 ℓ	140	200
	3 ℓ	210	300
	5 ℓ	350	500
	10 ℓ	700	1,000
	20 ℓ	1,400	2,000
	30 ℓ	2,100	3,000
	120 ℓ	8,400	12,000
	1kg	100	130
공동주택	1 ℓ	70	100
	120 ℓ	8,400	12,000
	1kg	100	130
음식점	1 ℓ	100	140
	1kg	130	190

※ 1) 2015년 :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

2) 2017년 :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다량배출사업장 : 별도 계약으로 정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 · 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 · 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계약비용	위탁 업 소 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주소 · 전화
	원 /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일)	처리 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뒷면)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 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⑥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일	배출량 kg/월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소재지

⑦공동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 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 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뒷면)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신 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면)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⑤ 공동 수집、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 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 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kg/일) /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 재활용	재활용량(kg/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 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kg/일)	처리예상량 (kg/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kg/일) /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대문구청장 직인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배출량 kg/월	배출량 kg/년	대표자	소재지
공동 수집·운반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 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 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 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방법	자가처리용량	자가처리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방법	위탁재활용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자	보관량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인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앞면)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참여 의향서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kg/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계획			kg/월
처리계획	자가처리		
	재활용량	처리방법	
	위탁처리		
	재활용량 / 업체명 / 처리방법		

※ 참여업체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방침을 세우고 이행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협약에 참여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협약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
대 표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참여 의향서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명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kg/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계획			kg/월
처리계획	자가처리		
	재활용량	처리방법	
	위탁처리		
	재활용량 / 업체명 / 처리방법		

※ 참여업체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방침을 세우고 이행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협약에 참여하고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협약과 관련하여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
대 표 :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매일 막대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Ⅰ. 음식업소(집단급식업소) 및 대규모 점포 등 협약사항

1 음식물의 생산·유통·조리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법을 적극 실천한다.
- 집단급식소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을 실천한다.
- 식품접객업 영업 및 관광숙박업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을 실천한다.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저온유통체제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을 실천한다.

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협약사항(음식업소)
- 협약이행 다짐대회, 서약운동 등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협약업소에 대한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 각종 회식, 모임 및 행사시 협약체결 음식점 우선 이용토록 홍보한다.

Ⅰ. 서대문구청 협약사항
-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년 월 일

업 체
대 표_____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장 서대문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매일 막대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Ⅰ. 음식업소(집단급식업소) 및 대규모 점포 등 협약사항

1 음식물의 생산·유통·조리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법을 적극 실천한다.
- 집단급식소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을 실천한다.
- 식품접객업 영업 및 관광숙박업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 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을 실천한다.
-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저온유통체제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을 실천한다.

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협약사항(음식업소)
- 협약이행 다짐대회, 서약운동 등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협약업소에 대한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한다.
- 각종 회식, 모임 및 행사시 협약체결 음식점 우선 이용토록 홍보한다.

Ⅰ. 서대문구청 협약사항
- 협약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년 월 일

업 체
대 표_____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장 서대문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이행 서약서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과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업 체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별지 제7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이행 서약서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심각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과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업 체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시행(2015.01.20)에 따라 이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준칙 안에 따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상기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청소행정과 행정7급 김세정(330-1528)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5.01.20] [법률 제13038호, 2015.01.20, 일부개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1호, 2014.12.31., 일부개정]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 4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마. (생 략)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 토.(생 략)				